



제349회 임시회

2016. 7. 14(목)

- 2016년도 제2회 세입·세출 추가경정예산안 -

# 검 토 보 고 서

(재난안전실)

건설소방위원회  
전 문 위 원

# 목 차

## 재난안전실 소관

### □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

#### 1. 세입예산

#### 2. 세출예산

－ 안전정책과

－ 재난관리과

－ 치수방재과

#### 3. 검토의견

- 재난안전실 소관 -

## 2016년도 제2회 세입·세출 추가경정예산안

### 1. 세 입 예 산

#### 가. 총 괄

- 재난안전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 $\Delta 0.08\%$ 인 9,518만원 감액된 1,212억 6,3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,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 3조 5,692억 3,340만원의 3.4%에 해당하는 규모임

《소관별 세입예산 규모》

(단위 : 천원)

소 관 별	예 산 액	기 정 예산액	증 감	
			금 액	비율 (%)
계	121,263,641	121,358,821	$\Delta 95,180$	$\Delta 0.08$
안전정책과	6,861,088	6,837,352	23,736	0.35
재난관리과	115,530	577,469	$\Delta 461,939$	$\Delta 79.99$
치수방재과	114,287,023	113,944,000	343,023	0.30

#### 나. 재원별 현황

- 세외수입 1.1%, 지방교부세 5.0%, 보조금 81.5%,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12.4%로 구성되어 있음
-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1.01%인 1억 3,230만원 증액된 13억 3,429만원을 편성하였으며, 주요 내용은 지난연도 도비반환금 및 기타이자수입임

-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2.03%인 1억 2,000만원 증액된 60억 4,187만원을 계상하였으며, 주요 내용은 국민안전처 폭염대응 추진 관련 재난안전 특별교부세임
-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△0.36%인 3억 6,200만원 감액된 988억 5,8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, 주요 내용은 재난안전통신망 확산사업 국고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반영내역임
-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0.1%인 1,451만원 증액된 150억 2,8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, 주요 내용은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및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임

《재원별 현황》

(단위 : 천원)

과 목	예산액		기정 예산액		증 감	
	금액	구성 (%)	금액	구성 (%)	금액	비율 (%)
합 계	121,263,641	100	121,358,821	100	△95,180	△0.08
세외수입	1,334,298	1.1	1,201,992	0.9	132,306	11.01
지방교부세	6,041,870	5.0	5,921,870	4.9	120,000	2.03
보조금	98,858,566	81.5	99,220,566	81.8	△362,000	△0.36
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	15,028,907	12.4	15,014,393	12.4	14,514	0.1

## 2. 세 출 예 산

### 가. 총 괄

- 재난안전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△2.59%인 38억 8,181만원 감액된 1,460억 1,9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,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 3조 5,692억 3,340만원의 4.09%에 해당하는 규모임

#### 《소관별 세출 예산 규모》

(단위 : 천원)

부 서 별	예 산 액	%	기정예산액	%	증 감	%	비고
계	146,019,781	100	149,901,596	100	△3,881,815	△2.59	
안정정책과	1,992,678	1.4	1,992,073	1.3	605	0.03	
재난관리과	537,269	0.3	1,248,162	0.9	△710,893	△56.96	
치수방재과	143,489,834	98.3	146,661,361	97.8	△3,171,527	△2.16	

- 재정별로 살펴보면,
  - 정책사업은 9개부문 19개 단위사업 1,294억 6,69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△3.28%인 43억 9,656만원 감액됨
  - 행정운영경비는 1억 9,24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없음
  - 재무활동은 163억 6,02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.34%인 5억 2,914만원 증액됨

## 나. 소관별 내역

### 【 안전정책과 】

- 안전정책과는 재무활동 등에 기정예산 대비 0.03%인 60만원 증액된 19억 9,267만원을 계상하였고,
- 주요 내용은, 민방위분야 국고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등 보전지출 60만원(100.0%)을 증액 편성함

### 《단위사업별 내역》

(단위 : 천원)

정책사업	단위사업	예산액	기정예산액	증감	증감률(%)
합 계		1,992,678	1,992,073	605	0.03
도민안전역량 강화	지역안전관리	289,980	289,980	-	-
	범도민안전의식개선 및 안전문화정착	238,100	238,100	-	-
민방위 및 위기 대응	민방위교육 훈련강화	123,667	123,667	-	-
	민방위 시설장비확충	18,870	18,870	-	-
	비상대비	159,130	159,130	-	-
	민방위경보 운영관리	147,816	147,816	-	-
통합방위태세 확립	예비군 육성지원	84,870	84,870	-	-
도민 안전인프라 구축	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	849,000	849,000	-	-
행정운영경비	기본경비	80,640	80,640	-	-
재무활동	보전지출	605	-	605	100.0

### 【 재난관리과 】

- 재난관리과는 재난 예방 및 관리 등에 기정예산 대비 △56.96%인 7억 1,089만원 감액된 5억 3,726만원을 계상하였고,
- 주요 내용은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보급 등 재난상황 관리 7억 1,089만원(△94.8%)을 감액 편성함

#### 《단위사업별 내역》

(단위 : 천원)

정책사업	단위사업	예산액	기정예산액	증감	증감률(%)
합 계		537,269	1,248,162	△710,893	△56.96
재난 예방 및 관리	재난안전 관리	155,600	155,600	-	-
	안전점검 운영	227,140	227,140	-	-
	재난상황 관리	38,972	749,865	△710,893	△94.8
도민의 민생 안전 구축	민생사법경찰 활동강화를 통한 안전충복실현	48,400	48,400	-	-
행정운영경비	기본경비	52,763	52,763	-	-
재무활동	보전지출	14,394	14,394	-	-

### 【 치수방재과 】

- 치수방재과는 자연친화적 하천환경조성 및 하천사용료수입관리 등에 기정예산 대비 △2.16%인 31억 7,152만원 감액된 1,434억 8,983만원을 계상하였고,
- 주요 내용은 수해상습지개선 및 고향의 강 정비사업 등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47억 567만원(△6.08%)을 감액하고, 하천사용료징수 교부금 등 하천사용료수입관리에 5억원(83.33%)을 증액 편성함

## 《단위사업별 내역》

(단위 : 천원)

정책사업	단위사업	예산액	기정 예산액	증 감	증감률 (%)
합	계	143,489,834	146,661,361	△3,171,527	△2.16
재난예방 및 복구	재난대비 계획수립	23,700	23,700	-	-
	재난예방 및 유지관리	525,550	305,550	220,000	72.0
	재해위험지구정비	22,029,500	22,029,500	-	-
자연친화적 하천환경 조성	하천재해예방사업	72,738,703	77,444,373	△4,705,670	△6.08
	하천정비기반구축	1,200,000	1,200,000	-	-
	하천유지관리사업	29,468,000	29,168,000	300,000	1.03
하천사용료수입관리	하천사용료징수교부	1,100,000	600,000	500,000	83.33
행정운영경비	기본경비	59,088	59,088	-	-
재무활동	내부거래지출	7,441,000	6,941,000	500,000	7.2
	보전지출	8,904,293	8,890,150	14,143	0.16

### 3. 검토 의견

- 재난안전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·세출예산안은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 일부 확보 및 하천재해예방사업을 통한 도민이 안전한 충북 실현에 주안점을 둔 예산 편성임
- 편성내역을 보면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의 예산 일부분을 고향의 강 정비 및 생태하천조성사업으로 변경 조정하여 이월사업비 최소화와 조기 준공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됨